

공학교육혁신센터 운영 규정

제정 2007. 06. 19

제 1 장 총 칙

제1조 (명칭) 본 센터는 호서대학교 공학교육혁신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라 한다.

제2조 (목적) 이 규정은 센터의 정의, 기능, 조직과 운영내용에 관한 세부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3조 (센터 설립목적 및 조직정의) ① 센터는 지역 산업 클러스터 기반의 특성화 인력양성을 목적으로 한다.

② 센터는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공학교육의 품질개선 활동, 혁신을 위한 전략의 수립 및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한다.

제4조 (센터기능) ① 센터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각 호와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.

1. 공학교육 혁신방향 설정
2. 공학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
3. 공학교육 방법 개발
4. 공학분야 교수평가 및 행정프로그램 개선방법 개발
5. 산학협력 강화 프로그램 개발
6. 연구역량 강화 프로그램 개발
7. 기타 위 각 호와 관련된 업무

② 제1항의 목적 외에 공학교육인증제의 운영과 관련된 주요 업무를 수행하며, 주요업무는 본 규정 제4장에 별도 기술한다.

제 2 장 조 직

제5조 (대학편제) 센터는 대학의 조직 상 학사부총장 직속 기구로 편제한다.(개정 2016.01.19., 2017. 6. 7)

제6조 (구성) 본 센터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.(개정 2016.01.19., 2017. 6. 7)

- ① 센터장(개정 2016.01.19)
- ② 부센터장 또는 전담교원(개정 2016.01.19., 2017. 6. 7)
- ③ 직원 및 연구원(개정 2016.01.19)
- ④ 조교(개정 2016.01.19)

제7조 (센터장) ① 센터장 및 부센터장은 공학계열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(개정 2017. 6. 7)

- ②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여 업무전반을 총괄 관리한다.
- ③ 센터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기간 임기를 보장한다.
- ④ <삭제 2016.01.19>

제8조 (책임연구원) ① 책임연구원은 본교 전임교원 중에 센터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
② 책임연구원은 센터장을 보좌하여 센터 운영의 실무를 총괄한다.

제9조 (직원 및 연구원, 조교) ① 센터의 전반적인 행정실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직원 및 연구원,

조교를 둘 수 있다.(개정 2016.01.19)

② 직원 및 연구원, 조교의 임명에 관한 사항은 본교 관련규정에 따른다.(개정 2016.01.19)

[제목 개정 2016.01.19]

제 3 장 위 원 회

제10조 (위원회) 본 센터에는 다음의 위원회를 둔다.(개정 2017. 6. 7)

- ① 센터운영 위원회
- ② 자체평가 위원회
- ③ <삭제 2017. 6. 7>
- ④ <삭제 2017. 6. 7>
- ⑤ <삭제 2017. 6. 7>
- ⑥ 공학교육인증 관련 제반 위원회

제11조 (구성) ① 센터의 각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할 수 있다.(개정 2017. 6. 7)

1. 센터운영위원회는 센터장, 부센터장, 전담교원, 간사 및 산하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구성한다.
 2. 자체평가위원회는 각 위원회 소속 위원 5인으로 구성 한다.
 3. <삭제 2017. 6. 7>
 4. <삭제 2017. 6. 7>
 5. <삭제 2017. 6. 7>
 6. 공학교육인증 관련 위원회의 구성은 본 규정 제16조를 따른다.
- ② 센터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센터장으로 한다.
- ③ 센터운영위원회 이외의 위원회는 자체적으로 각 1명의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발한다.
- ④ <삭제 2017. 6. 7>

제12조 (기능) 센터에 설치된 각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(개정 2017. 6. 7)

1. 운영위원회
 - 가. 센터의 사업계획 및 예산, 결산 처리
 - 나. 센터의 규정 등의 재(개)정
 - 다. 산하소위원회 업무 보고
 - 라. 기타 센터 운영과 관련된 주요사항 결정
2. 자체평가위원회
 - 가. 센터 업무 개선 및 보완을 위한 자체평가 및 검증 업무 수행
3. <삭제 2017. 6. 7>
4. <삭제 2017. 6. 7>
5. <삭제 2017. 6. 7>
6. 공학교육인증 관련 위원회의 기능은 본 규정 제16조를 따른다.

제13조 (위원회 소집과 의결) ① 센터의 각 위원회는 위원장의 소집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소집요구로 개최한다.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 4 장 공학교육인증

제 14조 (정의) 공학교육인증제라 함은 (사)한국공학교육인증원의 인증을 받은 프로그램을 이수한 학생에게 공학교육인증프로그램 이수자임을 보증하는 제도이다.

제 15조 (인증업무) ① 센터는 공학교육인증제를 운영하는 각 프로그램의 운영 및 평가의 지원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수행한다.

② 인증업무 수행을 위한 세부사항은 센터 업무편람에 정한다.

③ 인증프로그램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공학교육인증제 운영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.

제 16조 (위원회) ① 공학교육인증제를 운영하기 위해 센터에서는 다양한 위원회를 구성 할 수 있다.

②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, 구성,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사항은 공학교육인증제 운영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.

제 5 장 산업자문단

제 17조 (구성 및 기능) 센터의 혁신방향 설정을 위한 자문 및 산업체 의견반영을 위해 산하에 산업자문단을 두며, 사업참여기업의 임원을 자문위원으로 구성한다.

제 6 장 재정 및 회계

제 18조 (재정) 본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된다.

1.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지원금
2. 본교의 사업 지원금
3. 참여기관의 사업 지원금
4. 기타 수익금

제 19조 (운용) ① 센터의 회계연도는 본교 회계연도를 따르며, 대학 예산 규정을 준수한다.

②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에 다음해의 예산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, 매 회계연도 종료 1월 내에 전년도의 결산서와 사업보고서를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부 칙

제 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7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7. 6. 7)

①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.

<표 1> <삭제 2016.01.19>